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환경친화적선박의개발및보급
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, 개조 등을 할 경우 보조금 등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에 기존 해상여객운송사업, 유도선 면허를 받은 자 등에 더하여 선박연료공급업자 등이 추가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활성화 도모

3. 주요내용

가. 환경친화적 선박 매입, 개조 등 자금 지원 대상에 선박연료공급업자 등이 포함되도록 근거 마련(안 제10조제1항제7호의2 및 제10호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에 제7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용역업과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을 한 자

10.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0조의11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한 자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) ① 법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을 매입하거나 건조를 발주하는 자 또는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설치, 교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하려는 선박의 소유자(이하 “환경친화적 선박 구매자 또는 개조자”라 한다)로 한다.	제10조(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7의2.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용역업과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등록을 한 자
8. · 9. (생략)	8. ·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0.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0조의11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한 자

② ~ ⑦ (생 략)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839